감 사 의 견 서

농협법 제71조 및 우리농협 정관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서기 2024년 1월 15일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기 2023년도 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, 관련회계 및 제반 법규의 각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함을 인정함.

서기 2024년 1월 19일

지도농업협동조합

감 사 김 응 수 (인)

감 사 이 현 우 (인)